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에 반영

나.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안 제18조)

- 최근 3년간 통합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1회 이상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를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을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사서비스업”을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관계수급인’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으로 합산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하고, 수급인·관계수급

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전부 제외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한 경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한 경우는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을 “수급인”으로 본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한 경우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제6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항, 제169조제1호, 제170조제4호, 제172조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을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일로 본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 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제외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포함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법 제15조제4항 상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도 도급인 공사에 포함한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 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최근 3년 동안에 도급인 사업에서 발생한 도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와 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파견근로자 사고 사망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별표1 관련)이 인하(이하 ‘인하비율’이라 한다)되는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정은 별표1의2에 따른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4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법 제15조제6항제1호”를 “법 제15조제8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2호”를 “법 제15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6항제3호”를 “법 제15조제8항제3호”로 한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합 사고 사망자수	3명	4명	5명	6명 이상
산재은폐 및 미보고 無	40%	60%	80%	100%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 有	50%	70%	9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개정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및 증감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개정조문은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 ③ (생 략)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15조제5항-----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산재보험료율의 사업 의 종류 중 위생 및 <u>유사서비</u> <u>스업</u>	3. ----- ----- ----- <u>유사서비</u> <u>스업, 하수도업</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 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 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 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 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 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신 설>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관계수급인(이하 ‘수급인·관계수급인’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으로 합산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
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
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하고,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산재보험급
여 금액에서 전부 제외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
8조, 제59조, 제6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
터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한 경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
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경우는 “수급인”을 “도
급인”으로, “관계수급인”을 “수
급인”으로 본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

<신 설>

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태
료 부과처분한 경우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
법」 제63조부터 제65조 위반
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항,
제169조제1호, 제170조제4호,
제172조에 따라 검찰청에 송
치된 경우

4.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건
근로자(이하 ‘과건근로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
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날을 도
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보험급
여 지급일로 본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재보
험급여 금액을 산정할 때 수급
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7조제1
항, 제168조제1호에 따라 검찰
청에 송치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서 100분
의 50을 제외하고, 수급인·관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

<신 설>

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
에 그 100분의 50을 포함한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사업. 다만 법 제15조제4항
상의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 「산업안전보건
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
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 단
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
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
도 도급인 공사에 포함한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
외한다)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제16조의
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

<신 설>

<신 설>

②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 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최근 3년 동안에 도급인 사업에서 발생한 도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와 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사고사망자, 파견 근로자 사고 사망자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별표1 관련)이 인하(이하 ‘인하비율’이라 한다)되는 경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정은 별표1의 2에 따른다.

⑤ -----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 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 려야 한다.	----- ----- -----.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u>법 제15조제4항</u> 에 따른 재해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 으로 한다. 1. 2. (생략) ② 3. (생략)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u>법 제15조제6항</u> ----- ----- -----.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등) ① <u>법 제15조제4항</u> 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등) ① <u>법 제15조제6항</u> --- ----- -----.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 기간) <u>법 제15조제4항</u> 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 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 거나 취소(<u>법 제15조제6항제1호</u> 의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이 속 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	제18조의4(산재예방요율의 적용 기간) <u>법 제15조제6항</u> ----- ----- ----- ----- ----- ----- ----- <u>법 제15조제8항제1호</u> ----- ----- ----- -----.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u>법 제15조제6항제2호</u>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재해를 말한다. 1. ~ 6. (생략) ② <u>법 제15조제6항제3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u>법 제15조제8항제2호</u>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5조제8항제3호</u>----- ----- ----- -----. 1. ·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38